

의안번호	2125906
의 퇴 인	강병원의원
회 답 일	2024.01.11.
추계번호	23D504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의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범죄통계 작성,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조사·분석 실시 및 범죄예방정책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액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67억 8,900만원(연평균 13억 5,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범죄통계 작성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조사·분석 및 범죄예방정책협의체 운영(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1,091	1,382	1,425	1,438	1,453	6,789	1,357

- 주: 1. 본 추계결과는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통계 작성, 이상동기범죄 조사·분석 충원 인력의 인건비등을 산출한 것으로, 향후 실제 관련 인력 충원 규모 및 계급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본 추계결과는 재량지출성 재정수반요인을 일부 포함한 것으로,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이며,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3조의2 신설(범죄통계의 작성 등)	경찰청장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치안정책 수립을 위하여 범죄 계획성 및 범죄 동기 현황 등을 포함한 범죄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경찰청장은 범죄통계를 조사·분석하여 이상동기범죄 등을 포함한 범죄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33조의3 신설(범죄예방정책협의체)	행정안전부장관은 범죄 동기 유형별 대응책 마련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되는 범죄예방정책협의체를 둘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33조의2 신설(범죄통계의 작성 등)	○	-
2	안 제33조의3 신설(범죄예방정책협의체)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범죄예방정책협의체 민간위원 구성 및 실시 횟수 등의 운영 현황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민간위원 수당을 추계함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본 추계에서는 범죄통계 작성 항목 추가에 따른 범죄통계시스템 개발비 및 운영비, 범죄분석보고서 작성 및 이상동기범죄 조사·분석을 위한 인력의 인건비와 범죄예방정책협의체 운영에 따른 민간위원 수당에 대하여 추계함
- 현재 경찰청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2호¹⁾에 따라 범죄통계 관리, 범죄 동향 및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있고, 범죄통계시스템²⁾을 구축·운영 중에 있음

1) 제13조(수사기획조정관) ③ 수사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2. 범죄통계 관리, 범죄 동향 및 데이터 분석에 관한 사항

가. 범죄통계시스템 개편을 위한 개발비 및 유지관리비(안 제33조의2제1항)

□ 개정안에 따라 ①범죄계획성, ②정신질환 현황, ③범죄 동기 현황 등 통계 항목이 추가·변경됨에 따라 현 범죄통계시스템 개편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통계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 예산을 확보하고, 통계를 효율적으로 작성·보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2] 개정안에 따른 범죄통계 항목 중 현재 미수행 항목

구 분	개정안 범죄통계 항목	현재 미수행 항목
안 제33조의2제1항 각 호 (범죄통계의 작성 등)	1.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
	2. 범죄 발생 시간·장소, 범죄계획성 , 범행도구 사용 현황	범죄계획성
	3. 범죄자 성별·연령·전과 현황 및 범행 시 정신질환 현황	-
	4. 피해자 성별·연령·전과 현황 및 범행 시 정신질환 현황	(현행) 정신적 장애여부 →(안) 정신질환 현황
	5. 범죄 동기 현황(보복, 가정불화, 국가나 사회에 대한 불만, 성별·종교·인종 등에 대한 편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범죄 동기 현황
	6. 범죄자 마약류 상용 여부 현황	-
	7. 주요 범죄 발생 추세 및 범죄피해 추세	-
	8.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자료: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범죄통계시스템 개발비(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산출하면 2억 8,7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개발기능을 수치화하여 기능점수로 산출하고, 소프트웨어 개발규모, 연계 복잡성 등의 보정계수 등을 반영하여 2억 8,700만원³⁾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시스템 개편비용 2억 8,700만원을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3년 11월 기준)한 소비자물가상승률⁴⁾을 적용·산출하면 2억 9,300만원임(2025년 기준)

2) 경찰청은 2021년 범죄통계 개선을 위해 ISP(2억원), 2022년 범죄통계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46억 1,600만원, 하드웨어 구입비로 22억 6,000만원을 집행함

3) 기능점수 352.7FP(Function Point)에 기능점수당 단가(553,114원)를 곱하고, 보정계수 등(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호환성, 보안성, 이윤, 부가세)을 반영한 비용임

□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 요율 10%를 적용하여 산출하되, 구축된 해의 차년도(2026년)는 무상이고⁵⁾, 차차년도(2027년)부터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추계기간 동안 8,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시스템 유지관리비용 = 시스템 구축비용 × 유지관리 요율
 - 「2023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기준을 참고하여 유지관리요율 10%를 적용하여 비용을 산출

□ 범죄통계시스템 개발비 및 유지관리비는 2025년 2억 9,300만원 등 추계기간 동안 3억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표 3] 범죄통계시스템 개발비 및 유지관리비(추정):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개발비	293	-	-	-	-	293
유지관리비	-	-	29	29	29	87
합 계	293	-	29	29	29	38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범죄분석보고서 작성 및 이상동기범죄 조사·분석 인력 확충에 대한 인건비 등(안 제33조의2제3항)

- (범죄분석보고서 작성 인력)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범죄통계 항목 추가에 따른 범죄분석보고서 작성을 위해 조사·분석 인력 2명이 필요함
 - 경찰청은 ‘범죄통계’ 발간을 위해 현재 2명의 경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고, 개정안에 따라 범죄분석보고서 작성을 위해 경감 1명, 경위 1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4)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5년 2.2%, 2026년 2.2%, 2027년 2.1% 2028년 2.1%, 2029년 2.1%임

5)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S/W 도입 후 1년간은 무상하자보수 기간임

- (이상동기범죄 조사·분석 인력)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조사·분석 인력 21명이 필요함
- 현재도 경찰청은 이상동기범죄 조사·분석을 위해 36명(2024년 1월 기준, 경장)을 두고 있고, 개정안에 따라 이상동기범죄 조사·분석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청 및 지방청 조사·분석 인력 21명(경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2023년 1~10월 중 이상동기범죄로 추정되는 사건(통계원표 상 확인된 송치사건)은 총 1,109건(살인 4건, 상해 232건, 폭력 873건)임
 - 이상동기범죄 조사·분석 인력은 시·도청별로 최소 1명(서울, 경기남부는 각 2명), 본청에는 이를 정기적으로 취합해 분석하는 인력 2명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표 4] 이상동기범죄 조사·분석 인력 소요현황

(단위: 명)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	2	1	1	1	1	1	1	2	1	1	1	1	1	1	1	1	1	21

자료: 경찰청 자료

- (인건비등) 총원인력 23명(경감 1명, 경위 1명, 경장 21명)에 대한 보수, 기관부담금, 자산취득비 등 인건비등은 추계기간 동안 63억 9,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경찰공무원 보수는 2024년 경찰청 각목명세서를 참고⁶⁾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3년 11월)한 공무원임금상승률을 반영하고, 기관부담금과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기관부담금 비율, 공무원 1인당 자산취득비를 적용하며, 기본경비는 각 지방청별로 기본적으로 1명이 확충되므로 기존 경찰청 기본경비에서 충당 가능한 것으로 보안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경찰공무원 보수는 봉급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⁷⁾을 적용하고, 수당(정근수당 등)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

6) 2024년 경찰청 예산 각목명세서를 기준으로 하되, 신규채용인 점을 감안하여 경찰청 본부 인건비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2024년 기준 보수는 경감 7,685만원, 경위 6,832만원, 경장 5,003만원임. 동 보수에는 봉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 시간외수당(비현업), 정액급식비, 명절수당, 직급보조비, 전문직위수당(범죄통계 조사·분석, 이상동기범죄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을 포함한 금액이며, 가족수당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수당은 제외함

7) 2024년 이후부터 1.3%를 적용

하며, 2025년의 경우 채용기간을 고려하여 보수의 6개월분만을 반영함
 - 기관부담금(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은 보수에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요율⁸⁾을 적용하여 산출함
 - 자산취득비는 2025년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여 증원인력 23
 명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3년 11월)한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⁹⁾를 곱하여 산출함

[표 5] 충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등(추정):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보수	603	1,218	1,229	1,240	1,252	5,542
기관부담금	79	161	164	166	169	739
자산취득비	113	-	-	-	-	113
합계	795	1,379	1,393	1,406	1,421	6,394

주: 2025년의 경우 보수 6개월분만을 반영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범죄예방정책협의체 민간위원 수당(안 제33조의3)

□ 안 제33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범죄예방정책협의체는 2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사례인 드론산업협의
 체 위원 구성(정부위원 8명, 민간위원 12명) 및 개최 현황을 참고하여
 민간위원 수당을 추계하면 아래와 같음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
 조¹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
 체 위원으로 기획재정부차관 등 정부위원 8명과 민간위원 12명 등 20명

8) 2025년 13.114%, 2026년 13.210%, 2027년 13.305%, 2028년 13.399%, 2029년 13.494%

9) 2025년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는 4,893,000원임

10) 제5조(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드론산업협의체(이하 "드론산업협의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② (생 략)

③ 드론산업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드론산업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
 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
 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2. (생 략)

의 위원이 활동 중이며, 1년에 1회¹¹⁾ 개최됨

- 드론산업협의체 위원 구성 및 개최 현황을 참고하여 범죄예방정책협의체 20명 위원 중 정부위원은 8명, 민간위원은 12명으로 가정하고, 1년에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여 위원 수당을 산출함

[표 6] 범죄예방정책협의체 민간위원수당(추정): 2025~2029년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민간위원(A)	12	12	12	12	12	—
회의개최일수(B)	1	1	1	1	1	—
회의참석수당(C)	0.25	0.25	0.25	0.25	0.25	—
추가재정소요 (D=A×B×C)	3	3	3	3	3	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추계결과

- 추계결과, 범죄통계 작성,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조사·분석 실시 및 범죄예방정책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액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67억 8,900만원(연평균 13억 5,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시스템개발 및 유지관리비	293	—	29	29	29	380
인건비등	795	1,379	1,393	1,406	1,421	6,394
민간위원 수당	3	3	3	3	3	15
합계	1,091	1,382	1,425	1,438	1,453	6,78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1) 2020년 11월(드론분야 핵심기업 육성방안 등 심의·의결), 2021년 12월(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심의·의결), 2023년 6월(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등 심의·의결)에 개최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통계 작성, 이상동기범죄 조사·분석 충원 인력의 인건비등을 산출한 것으로, 향후 실제 관련 인력 충원 규모 및 계급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결과는 재량지출성 재정수반요인을 일부 포함한 것으로,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이며,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최형수	오명희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형수	02-6788-4667	jjaps@na.go.kr